

# 예산총칙

2004 년도 [0 본예산]

\* 제1조 : 2004 년도 세입 · 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회 계 별	세입 · 세출 예산 총액	일 시 차 입 한 도 액
총 계	493,210,000	14,796,300
일 반 회 계	421,200,000	12,636,000
특 별 회 계	72,010,000	2,160,30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680,000	200,400
주택사업특별회계	3,050,000	91,500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9,400,000	282,000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890,000	26,700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2,400,000	72,000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680,000	80,400
치수사업특별회계	800,000	24,000
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	1,470,000	44,100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	680,000	20,400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16,120,000	483,600
청소사업특별회계	27,840,000	835,200

○ 상수도(공기업)사업 특별회계 : 34,980,000천원

제2조 세입 · 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 · 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2004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6,000백만원으로 한다.

제4조 2004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5조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140,963천원으로 한다.

제7조 지방재정법 제38조 단서규정에 의한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 기본급 및 수당, 기타직 공무원의 보수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복리후생비, 직급보조비
3. 배상금, 국선변호료, 법정보상금
4. 지방채원리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 경비
5. 재해대책비
6. 반환금
7. 선거관련경비